

# 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

1995. 10. 7 제정

2010. 7. 7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삭제 2010.7.7)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의·식·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관련하여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·식·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관한 연구사업
2.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
3. 의·식·주 등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재교육사업
4.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사업
5. 학술활동의 활성화 사업
6. 출판물 간행사업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소비자정보센터, 아동가족연구센터, 의류직물연구센터, 식생활정보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10.7.7)

②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 분석을 기초로 소비자의 소비행동, 소비현상 및 소비경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제 소비시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 기업, 연구소, 정부기관 등과 긴밀하게 연구협력 및 교류하여 가족생활이나 산업체에 응용할 수 있는 소비자 생활정보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05.2.11)

③아동가족연구센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발달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부모교육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실시하며,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문제를 예방·해결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·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0.7.7)

④의류직물연구센터는 의류직물 전반에 걸친 연구, 정보수집,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05.2.11)

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

⑤식생활정보연구센터는 국민건강과 영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·영양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식생활관련 정보수집과 개발, 식생활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0.7.7)

⑥행정실은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, 출판,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6 조 (연변연구센터) ①연변지역 조선족의 생활에 관한 연구 및 학술교류, 교육,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변연구센터를 둔다.

②연변연구센터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설치하며, 그 명칭은 “연변과학기술대학 이화생활과학연구소”라 한다.

③연변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소장의 협조를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7 조 (센터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②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8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 (개정 2010.7.7)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9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10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11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(개정 2010.7.7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3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과 그에 대한 이자분 기타 연구비 등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부 칙(1995. 10. 7 제정)

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6. 23 개정)

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14 개정)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7 전문개정)

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4. 2 개정)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2. 11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인간생활환경연구소 규정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